

# 의 안 발 의 서

의 번	안 호	2011 -
--------	--------	--------

수 신 : 거창군의회의회장 2011. 11. .

제 목 :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: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

발의자 : 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의원

(찬성자 서명 별첨)



의안번호	제 호
의결연월일	2011. 11. . (제179회)

의  
결  
사  
항

##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 의원 공동발의)

발 의 자	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 조기원·안철우 의원
발의연월일	2011. 11. .

#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조기원·안철우 의원 공동발의)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. 11. .

발 의 자 : 이성복·강철우·백범영·  
조기원·안철우 의원

## 1. 제안이유

-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「지방자치법」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과 관련 있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위원회의 직무 대행 사항을 정함(안 제8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4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라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위원중 연장자가”를 “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,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”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<u>위원중 연장자가</u>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,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[시행 2011.10.15] [법률 제10827호, 2011. 7.14, 일부개정]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7.14>